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법”, “영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법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 단서 중 “시행령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「산림법 시행령」 제62조제1항”을 “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- 4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「민법」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
- 10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
- 1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(문화예술 기관·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)로 운영하는 경우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</u>」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<u>법</u>", "<u>영</u>"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·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</u>」 및 같은 법 시행령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| <p>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시장은 <u>법</u>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구청장, 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| <p>제3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----- 「<u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</u>」 (이하 "<u>법</u>"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4조 (공유재산심의회 의 구성·운영 및 업무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심의회 운영·기능 및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<u>시행령</u>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% 이상,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%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| <p>제4조 (공유재산심의회 의 구성·운영 및 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「<u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</u> 시행령(이하 "<u>영</u>"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</p> |
| <p>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·② (생 략)</p> | <p>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·② (현행과</p> |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| | |
|---|--|
| <p>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 의 25 이상으로 한다.</p> | <p>같은) ③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|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 3호의 문화시설을 「민법」 제39 조의 규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</p> |
| <p>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 의 10 이상으로 한다.</p> | <p>④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1. ~ 9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|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 「민법」 제 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 인이 운영하는 경우</p> |
| <p><u><신설></u></p> | <p>1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(문화예술 기관· 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 설을 말한다)로 운영하는 경우</p> |
| <p>⑤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 부요율은 「산림법 시행령」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.</p> | <p>⑤----- -----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1항-- -----.</p> |